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51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김교흥・박성민・이용우

노종면 • 이훈기 • 유동수

정일영 • 박선원 • 허종식

김기현 · 서범수 · 김태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에 따르면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2개 이상 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으나, 통 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1 00분의 200을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 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8조(통합채산제) ① ---제18조(통합채산제) ① 유료도로 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 는 둘 이상의 유료도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 을 수 있다. 이 경우 유료도로 -----. <후단 삭제> 다만, 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유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승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 19조에 따른 통행료 및 수납기 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 총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 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 서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 <신 설> 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 료도로를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9 조에 따른 통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 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